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연 구 용	연구주제	제·개정을 요하는 사무의 관련 조례 정비 방안 제시		
	연구목적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별 첨 가 능)		
연 구 활동비	수 령 액	금삼백만원 (₩3,000,000)		
	집 행 액	금이백구십구만구천일백원 (₩2,999,100)		
	잔 액	금구백원 (₩900)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비	금이백구십구만구천일백원 (₩2,999,100)	
		전문가 활동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정 책 개발비	수 령 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집 행 액	금일천사백삼십구만사천팔백원 (₩14,394,800)		
	잔 액	금육십만오천이백원 (₩605,200)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2021년 12월 31일
 대 표 : 김 미 영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 보고서**



2021. 12. 31.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목 차

I. 연구단체 개요	1
II. 연구단체 운영계획	2
III.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3
IV. 연구단체 활동내용	5
1. 연구활동 개요	5
2. 연구활동 상세내역	6
V. 언론에 비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31
1. 보도자료	31
2. 언론보도 내역	41
VI. 연구단체 활동결과	42

【부록】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대표의원 제안설명문	43
2.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대표의원 개회사	45
3.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표의원 인사말	48
4. 김미영 대표의원 5분 자유발언문	50
5.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별첨】

1.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

... | 연구단체 개요

1. 단 체 명 :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2. 설립목적

-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과 관련 조례를 정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설립근거 및 등록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등 록 일: 2021. 7. 15.(수)

4. 구성의원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김 미 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대표의원
2	이 명 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간 사
3	박 삼 례	제8대 광진구의회 의장(현)	
4	추 윤 구	제3대 광진구의회 의장(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5	고 양 석	제7대 광진구의회 의장(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6	장 길 천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 활동기간 : 2021년 7월 ~ 12월

6. 소요예산 : 21,820천원

●● II | 연구단체 운영계획(세부계획)

1. 연구활동기간: 2021년 7월 ~ 2021년 11월

2. 연구단체명: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3. 연구목적

- 광진구 사무위탁의 법령 불부합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발굴·검토
-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 제도방안 방향 제시

4. 주요연구내용

-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집중 발굴·검토
- 제·개정을 요하는 사무의 관련 조례 정비방안 제시

5. 예산소요내역

예산과목	산출내역
연구활동비	간담회 등 소요경비 = 3,000,000원 연구단체 지원여비(2박3일 기준), ※운임비는 실비 지급 235,000 × 6명 × 2회 = 2,820,000원 강사료 500,000원 × 2회 = 1,000,000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000 × 3명 = 15,000,000원

6. 세부일정

내 용	일 정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2021.7.
의원연구단체 용역 추진	2021.8. ~ 2021.10.
간담회 및 자체 교육	2021.8. ~ 2021.9.
연구용역 마무리	2021.10.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서 정리	2021.11.
결과보고서 제출	2021.12.

III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 총 사용금액: 2,999,100원

구분	간담회 및 세미나	연구용역 보고회	현장방문	기타
지출금액	2,065,900원	348,300원	584,900원	-
합 계	2,999,100원(잔액:900원)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지출액(원)	비고
1	2021.7.20.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오찬간담회	121,000	
2	2021.7.30.	발족식 현수막 제작	22,000	
3	2021.8.5.	의원연구단체 발족식개최 오찬간담회	103,000	
4	2021.8.5.	의원연구단체 발족식개최 오찬간담회	100,000	
5	2021.8.10.	용역착수보고회 오찬간담회	116,000	
6	2021.9.7.	용역중간보고회 오찬간담회	191,000	
7	2021.9.7.	용역중간보고회 차담회	13,300	
8	2021.9.8.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오찬간담회	177,000	
9	2021.9.8.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오찬간담회	31,100	
10	2021.9.9.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오찬간담회	160,000	
11	2021.9.9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차담회	27,800	
12	2021.9.27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현수막 제작	22,000	
13	2021.9.28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식사경비	148,000	
14	2021.10.7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오찬간담회	165,000	
15	2021.10.7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오찬간담회	70,000	
16	2021.10.7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차담회	34,700	

17	2021.10.7	의원연구단체	용역최종보고회	간식비	28,000	
18	2021.10.8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오찬간담회	85,000	
19	2021.10.8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오찬간담회	180,000	
20	2021.10.8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차담회	50,200	
21	2021.10.27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53,000	
22	2021.12.2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20,000	
23	2021.12.2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9,000	
24	2021.12.2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5,000	
25	2021.12.2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5,000	
26	2021.12.2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20,400	
27	2021.12.2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7,000	
28	2021.12.24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0,000	
29	2021.12.27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18,000	
30	2021.12.27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21,600	
31	2021.12.27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120,000	
32	2021.12.29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논의 간담회	25,000	
합 계					2,999,100	

○ 예산과목: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의회비 의정
운영공통경비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IV | 연구단체 활동내용

□ 연구활동 개요

	일 시	장 소	활동내역	비 고
1	2021.7.20.	6층 브리핑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공유 및 방향 등 논의(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2021.8.2.	광진구의회	연구용역 계약체결 - 용역명 :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	
3	2021.8.5.	6층 브리핑룸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개최	
4	2021.8.10.	6층 브리핑룸	민간위탁 교육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5		6층 브리핑룸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간담회 (제1차 통장협의회 간담회)	
6	2021.9.7.	6층 브리핑룸	민간위탁 교육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7	2021.9.9.	6층 브리핑룸	실무진 간담회	
8	2021.9.28.	6층 브리핑룸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간담회 (제2차 통장협의회 간담회)	
9	2021.10.7.	양천구 신정동	관외) 민간위탁시설 현장방문 -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10		6층 브리핑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1	2021.10.8.	광진구 강동구	관내) 민간위탁시설 현장방문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12	2021.10.27.	기획위원장실	민간위탁, 통반, 입법평가, 주민자치회 조례 논의	
13	2021.12.21.~29	대표 연구실	보고서 작성 및 발의 조례 검토 논의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공유 및 방향 등 논의

□ 개 요

- 일 시 : 2021. 7. 20.(화) 10:30 ~ 12:00
- 장 소 : 의장실
- 인 원 : 4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장길천의원)
- 내 용
 - 연구활동계획 공유 및 구체적 논의

월	활동내용
2021. 7월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2021. 8월 ~ 9월	의원연구단체 용역 추진
2021. 9월 ~ 10월	간담회 및 자체교육 실시
2021. 10월	현장방문
2021. 10월 ~ 11월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서 정리
2021.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용역 추진 계획 등 내용 논의

- 과 업 명 :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0일
- 과업지시서(안) 내용 공유 및 용역업체 전달사항 검토
- 과업 내용 :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적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 조례의 기술적 측면 검토
 조례 제·개정을 요하는 위탁 관계조례 정비방안 등

2.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연구용역 결과물,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별첨]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제명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서	
소요예산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부가세 포함-
소요기간	2개월(60일)
연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위법한 조례를 적용한 위법행정에 대해 중앙의 장악력이 더욱 커짐 ○ 광진구 자치법규 중 위탁 관련조례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령 불부합 조례,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의회로서의 기능 강화 및 연구·공부하는 구의회 이미지 제고 ○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함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위탁 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집중 발굴·검토 ○ 제·개정을 요하는 사무의 관련 조례 정비방안 제시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진구 위탁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보고서 ○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전부 개정시안 제시 ○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련 개별조례 정비방안 제시 ○ 광진구의원의 조례 발의로 광진구 자치입법 구현 및 선도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와 함께 3회(6시간) 강의 ○ 용역 결과물을 행감, 예·결산 자료로 행정실무에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음(), 있음(○)
제안자	소속: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성명: 최인혜 

3.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개최

□ 개 요

- 일 시 : 2021. 8. 5.(목) 11:00 ~ 12:00
- 장 소 :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6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의원)
- 내 용
 -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발족식 개최
(대표위원 인사말씀 및 활동 소개, 간담회 등)
 -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에 관한 토론

□ 발족식 개회사 (대표 : 김미영 의원)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광진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광진구의회도 그 역할이 막중해졌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회가 최일선에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나아가 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직접 마주하는 위탁의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새롭고 함께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일부 발췌)

□ 주요 논의 사항

-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제안서’ 를 위주로 용역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그와 관련한 자체 교육 일정을 강사와 조율해서 추진 필요
- 광진구 사무 위탁 관련 조례 검토 의견
- 타구 우수 조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건의
- 시대에 맞는 조례 제·개정 제시 필요
- 입법 기관으로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단체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연구단체로 거듭나길 당부

□ 현장사진



4. 민간위탁 교육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8. 10.(화) 10:00 ~ 12:00

□ **장 소** : 의회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4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장길천 의원)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 **주요내용**

○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업 추진방향 논의

- 과업 수행에 따른 법적논거

⇒ 법령상 명문의 규정, 사법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등

- 과업 수행 방법

⇒ 위탁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검토,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발굴 후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타

⇒ 위탁 관련조례의 법적근거 및 적합성, 입법미비 등 법적 안정성
저하 검토, 위탁사무별 개별조례 설치(제·개정) 여부

□ 주요 논의 사항

- 위탁 관련 조례의 위원회 및 재위탁 조항, 공공위탁 내용 부재로 인한 입법 미비 사항 등 위탁 조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용역 내용 답을 수 있도록 제언
-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검토 요구
- 과업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0일

□ 현장사진



5.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제1차 통장협의회 간담회

□ **일 시** : 2021. 8. 10.(화) 14:00 ~ 15:30

□ **장 소** : 의회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3명(김미영, 이명옥, 장길천 의원),
박상범 광진구청장협의회장 외 5명

□ **주요내용**

-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 관련 의견청취 등

□ **통장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 신규 위촉 시 위촉장 수여 및 임기 만료로 해촉 시 감사장 수여
- 현재 최대 6년인 통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반장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여 불필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애로사항(법적근거)
- 아차산메아리 배부 방식 개선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려움

□ 현장사진



6. 민간위탁 교육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1. 9. 7.(화) 14:00 ~ 15:30

□ **장 소** : 의회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6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장길천, 고양석, 추윤구 의원),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 **주요내용**

○ 위탁 제도 개선 방안

-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위탁 관련조례의 입법미비 사항 검토
-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기술적 측면 검토
- 위탁 관련조례 정비를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주요 논의 사항**

- 행정사무위탁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로 철저한 법령 준수 필요
-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탁 사무 집중 분석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다짐

□ 현장사진



7. 실무진 간담회

I 회의개요

- 일시: 2021. 9. 9.(목) 09:30~11:30
- 장소: 김미영 의원연구실
- 참석자: 김미영 대표의원, 김동률 입법담당, 윤형순 서무주임,
변은정 주임 (총 4명)

II 회의내용

- 주요 논의사항
 - 자치법규연구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실무진 의견청취
 - 세부 사항
 - 연구용역(위탁 관련) 추진 사항 및 세부계획 점검
 - 위탁 관련 현장방문 장소 선정
 - 관내 공공위탁, 민간위탁 업체 선정 후 방문
 - 관외 민간위탁업체 방문 *서울시 운영 기관 중 우수업체 선정
 - 위탁 관련 현장 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 관내 공공·민간위탁 업체 초청 후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민간위탁 관련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여부 중점 확인 및 운영사항 개선 방안 논의
- *필요시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관련 ‘노무비전용계좌 사용 서약식’ 추진

- 조례 제·개정 건

· 자치법규연구회 연구 결과를 통한 조례 제·개정 사항 논의

○ 기타 의견

- 현장방문, 간담회 외 신규연구방법 도출 필요

- 타 자치구 연구용역 방안 벤치마킹 및 검토

III 회의결과

○ 현장방문

- 관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업체 각 1일 방문

- 서울시 운영 민간위탁 우수사례 업체 1일 방문

○ 간담회

- 관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업체 초청 후 광진구의회에서 소통간담회 1회 개최

○ 조례 제·개정

-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후 주민체감형 조례 제·개정 추진

○ 회의사진



※ 향후 자치법규연구회 위원 간 전체회의를 통해 실무진 의견 반영 예정

8.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제2차 통장협의회 간담회

□ **일 시** : 2021. 9. 28.(화) 14:00 ~ 15:00

□ **장 소** : 의회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3명(김미영, 이명옥, 장길천 의원),
광진구청 관계 공무원 및 구의회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제1차 통장협의회 간담회 건의사항 결과 보고

□ **통장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 신규 위촉 시 위촉장 수여 및 임기 만료로 해촉 시 감사장 수여
- (자치행정과) 2022년 추진

○ 현재 최대 6년인 통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자치행정과) 통장 임기 연장의 경우 신규 희망자에 대한 역차별 등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체제 유지

○ 반장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여 불필요

- (자치행정과) 현재 반장의 인원은 자연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별 여건에 맞춰 지속적 감축을 추진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애로사항(법적근거)

- (자치행정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정 의무

○ 아차산메아리 배부 방식 개선

- (홍보담당관) 각 동 현황에 맞는 통별 배부 수량 조정, 자율 배부대 및 그늘막 배부대 추가 제작 등 개선 노력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려움
 - (부동산정보과) 현재 상세주소 직권 부여 330건, 소유자 및 임차인 1,594명에게 고지 완료하였으며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현장사진



9. 민간위탁 시설 현장방문_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일 시 : 2021. 10. 7.(목) 10:00 ~ 14:00
- 장 소 :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양천구 소재)
- 참석자 : 연구위원 4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장길천 의원),
의회 전문위원 및 의정팀

※기관소개

- 기관명: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소재)
- 운영법인: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개관일: 1997. 11. 15.
- 위탁기관: 2016. 11. 1. ~ 2021. 10. 31.
(5년간)
- 예산: 약 25억원(2021년 기준)
- 직원: 총 35명(정규직 24, 계약직 11)



□ 주요내용

- 방문목적
 - 서울시 운영 우수 민간위탁업체 벤치마킹(관외 업체 中 선정)
- 논의사항
 - 위탁운영 방향, 자체 사업 및 프로그램 참관 등 현황 파악
 - 주민센터 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 논의

- 시설종사자 운영 및 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파악
- 보조금 관리 및 노무비전용계좌 사용에 관한 사항 점검

○ 결론

- 사업 및 시설종사자 관리 방안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자본 관리 방안

⇒ 현장방문을 통한 우수 사례, 광진구 민간위탁 업체 도입 적극 검토

□ 현장사진



10.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1. 10. 7.(목) 15:00 ~ 16:30

□ **장 소** : 의회 6층 브리핑실

□ **참석자** : 연구위원 6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장길천, 고양석, 추윤구 의원),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 **주요내용**

○ 연구수행 방법

-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 유형별 문제점 분석
-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 검토(용역 결과물)

○ 논의사항

- 지속적인 광진구 자치법규 연구 필요
- 전문위원실 협조를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 진행

□ **결론**

-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
-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한 입법체계 구현
-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 마련 강구

□ 현장사진



11. 관내 민간·공공위탁 시설 현장방문

□ **일 시** : 2021. 10. 8.(금) 10:00 ~ 17:00

□ **장 소** : 관내 민간·공공위탁업체 4곳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 **참석자** : 연구위원 6명(김미영, 이명옥, 박삼례,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의원), 의회 전문위원 및 의정팀

□ **주요내용**

○ 방문목적

- 관내 87개 수탁기관 중 생애주기별(아동-청년-노년)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현황 점검
-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공공위탁업체인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를 방문하여 공공위탁운영 현황 파악
⇒ 민간·공공위탁을 포함한 위탁 사무를 종합적으로 파악

○ 논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보조금 관리 및 보건의료복합타운 이전 준비 등 전반적인 센터 운영 방안 파악
- (청년센터 광진 오랑) 서울시 운영 11개 청년센터 오랑 및 이전 운영 된 ‘무중력지대 청년센터’ 운영 방안 비교 분석
그 외 관내 청년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사용 내역 등 운영 방안 점검

- (광진시니어클럽) 위탁운영 방안 및 노인일자리 사업 중점 점검
 -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공공위탁 운영 방안 파악
- *현재 강동구 외 6개 지역에서 이용(성동, 광진, 은평, 관악, 중랑, 구리)*

○ 결론

- 광진구 내 위탁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방안, 애로사항 청취, 개선사항 등을 파악
-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의회에서 적극 협조
- ‘노무비 전용계좌’ 와 같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향후 조례 개정·예산 편성 등 적극 검토

□ 현장사진

	
<p>〈육아종합지원센터〉</p>	<p>〈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p>
	
<p>〈광진시니어클럽〉</p>	<p>〈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p>

12. 자치법규(조례) 논의를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21. 10. 27.(수) 14:00 ~ 15:30

□ **장 소** : 의회 기획위원장실

□ **참석자** : 연구위원 3명(김미영, 이명옥, 장길천 의원),
의회 전문위원

□ **주요내용 및 결론**

○ 연구단체 결과물(조례안) 논의

-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무비 전용계좌’ 관련 조항 신설 및 연구용역 결과물 반영, 2022년 회기 중 추진 예정

-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사항 반영,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2021.12.20.)

-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집행부 협의 후 2022년 추진 예정

- (가칭)광진구 입법평가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2022.1.13.) 이후 추진 예정

□ 현장사진



13. 보고서 작성 및 발의 조례 검토 논의를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21. 12. 21.(화) ~ 29(수)

□ 장 소 : 의회 대표연구실

□ 참석자 : 전체 연구위원, 의회 전문위원 및 의정팀

□ 주요내용 및 결론

○ 연구단체 활동 보고서 작성 논의

- 목차 구성에 관한 논의

⇒ 연구단체 개요/ 연구단체 운영계획/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연구단체 활동내용(연구활동 개요, 연구활동 상세내역)/
언론에 비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보도자료, 언
론보도 내역)/ 연구단체 활동결과/ 부록(의원연구단체 등록
대표의원 제안설명문,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대표의원 개회
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표의원 인사말, 대표의원 5분
자유발언문,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광진
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연구단체 결과물을 통한 추후 조례발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

-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
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

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
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민자
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진구에 맞는
조례 제정 필요


-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9월 기준 광진구 부서별 민간업체 수탁기관 86개
중 노무비계좌 사용 업체가 72개로 대다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노무비 전용계좌’ 관련 조항 신
설을 통한 법적 근거 기준 마련 필요

-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입법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타 자치단체(예, 광주광역
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 2021. 2.15. 제정)와
같이 별도의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차원에
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p style="text-align: right;">* 이 조례는 제정당안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p>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2>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9. 7. 16.]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94호, 2019. 7. 16.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469-7192</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통무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의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라 함은 "위원"이라 한다.이단 해당 종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이라 함은 "총회"라 한다.단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등 주민이 일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등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p>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복리후생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투명·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추진의 배제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h2>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94호, 2020. 7. 16. 제정]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02-2133-5917</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중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무의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라 함은 지역자치회, 법회, 광촌, 신태농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자치를 말한다.</p> <p>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p> <p>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컨설팅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제3조(지원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치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h2>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28호, 2021.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02-460-7266</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공기관법」 제117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1.12.30.></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위탁"이란 다음 법안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함)의 상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5. "계약금"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p>제3조(계약방법)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h2>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시행 2021. 1.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02-460-7287</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정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p> <p>[전문개정 2021.09.14]</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함)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와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린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공표제"란 법적인 효력이 시행될 경우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손실소액(이하 "비용"이라 함)에 관하여 추정(이하 "비용추정"이라 함)한 자료를 말한다. 5.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h2 style="text-align: center;">'노무비 전용계좌' 쓰는 지자체 절반뿐... 실망스런 공공분야</h2> <p>2021.07.28. 04:30(한국일보)</p> <p>[중간취직의 자로도, 그 후]</p> <p>① 민간위탁 노동자 중간취직 방지하는 지자체</p>  <p>서울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는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모습. 정부가 2019년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보조금 보호 가이드라인'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중간취직 등을 할 것이 없도록 보호하는 취지를 적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확인 결과, 전국 167개 광역 지자체와 서울 25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를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p>	<p style="text-align: right;">* 이 조례는 제정당안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p> <h2 style="text-align: center;">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h2>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2. 1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92호, 2021. 2. 15.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법무지원과) 062-960-8073</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우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제국적 조치를 위한 실행의 과정을 말한다.</p> <p>제3조(규정사항의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사무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배분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V | 언론에 비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21년 8월 1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이진구 (☎2049-4645)

제 공 일 자	2021년 8월 12일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49-4630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정팀)	팀 장	김 형 일	2049-4633
사진있음	총 1매	담 당 자	윤 형 순	2049-4634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한 첫걸음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8월 10일 브리핑실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발족식을 가지며,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계획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이명옥, 장길천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조사 및 발굴하고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미비점 분석 과정 등을 거쳐 견고한 자치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위배한 위원회, 재위탁 조항, 공공위탁 내용 부재로 인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언급하며, 위탁 조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이 가진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을 위해 위탁 제도가 활성화 됐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행정 운영에 절차상 하자, 위탁사무 사후 관리 부적정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지방자치 시대, 주민 만족도가 한층 향상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진 '광진구자치법규연구회'는 2개월간 일정으로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를 분석 및 검토할 계획이다. <끝>

[사진자료]



▲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왼쪽부터) 장길천, 이명옥, 김미영(대표), 박삼례 위원, 최인혜 소장

이 보도자료는 2021년 9월 8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
회

보
도
자
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이진구 (☎2049-4645)

제 공 일 자	2021년 9월 8일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49-4630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정팀)	팀 장	김 형 일	2049-4633
사진있음	총 2매	담 당 자	윤 형 순	2049-4634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위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주민이 중심인 광진 2.0시대 구현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9월 7일 브리핑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진구 자치법규 중 위탁과 관련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자치법규연구회는 중간 점검을 추진하며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 및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

「위탁제도개선의 이해를 주제」로 시작된 보고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 계약기간 및 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위탁, 공공위탁 조례 부재, 지방계약법 위반 계약조항, 혼재된 용어 사용' 등 위탁 관련 조례가 가진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이 논의 되었다.

위원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자치법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하고, 광진구 입법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시대는 지방의회에 보다 중요한 책무를 부여했다"며,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사무를 집중 분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의 위탁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발족하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광진구의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끝>

[사진자료]



▲ (왼쪽부터) 고양석, 이명옥, 김미영(대표), 박삼례, (최인혜 소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



▲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광진구의의회자치법규연구회'

이 보도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이진구 (☎2049-4645)

제 공 일 자	2021년 9월 30일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49-4630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정팀)	팀 장	김 형 일	2049-4633
사진있음	총 2매	담 당 자	윤 형 순	2049-4634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통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 추진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9월 28일 브리핑실에서 광진구통장협의회를 초청해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 8월 통장 업무 개선을 위해 통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나누고 추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장길천 위원과 광진구통장협의회 박상범 회장, 오명숙 사무국장과 정헌용(중곡2동), 김지성(광장동), 주경희(구의1동), 채금희(자양3동) 회장,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이석구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통장 위촉장·감사장 수여, ▲통장 임기 연장 검토,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애로사항, ▲아차산메아리 배부 방식 개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려움 등으로 각 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아차산메아리 통별 배부 수령 조정, 자율 배부대 추가 제작, 우편발송(DM), 해당 부서와 협조, 안내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통장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현실적인 제도정비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광진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통장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한 제도로 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해 광진구 입법체계를 보완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끝>

[사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이진구 (☎2049-4645)

제 공 일 자	2021년 10월 12일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49-4630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정팀)	팀 장	김 형 일	2049-4633
사진있음	총 2매	담 당 자	윤 형 순	2049-4634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양날개로 비상하는 위탁사무 추진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10월 7일 6층 브리핑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광진구 위탁 관련 조례 전반을 검토하고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 용역에 착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며 위탁사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열린 최종 보고회는 2개월간 부단히 달려온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보고는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유형별 문제 사례 점검, 구체적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문제를 유형화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 유형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계약 기간,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사무의 위탁, 법정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위탁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를 살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위탁 개별 조례를 면밀히 분석, 위탁·대행·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위원회 배제, 재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적 법적 기준 모호 등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보고를 마치며 위원들은 시야가 한층 넓어지는 시간이었다면서 연구결과가 행정 서비스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행정은 직접 생산·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의 범위 확대 및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행된 민간 위탁이 입법 체계 미흡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견고히 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민간 위주로 진행된 위탁 사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두 달간 공공위탁 영역까지 시야를 확장해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가 견고한 입법 체계 구현,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이진구 (☎2049-4645)

제 공 일 자	2021년 10월 13일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49-4630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정팀)	팀 장	김 형 일	2049-4633
사진있음	총 2매	담 당 자	윤 형 순	2049-4634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 다양한 위탁 사례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일정으로 민간위탁 시설 현장방문에 나섰다.

위탁 제도 및 조례에 관해 연구 중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장을 직접 찾아 위탁시설이 적법한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

방문 장소는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내 민간위탁광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5개소로 상위기관 위탁, 관내 민간위탁, 공공위탁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관내는 전세대를 살피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시설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7일 서울시 민간위탁 우수사례인 양천구 소재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위원들은 운영 방식, 위탁 현황 및 법규 등 참조할 점등을 파악했으며, 위탁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점,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살폈다.

8일에는 먼저, 관내 민간위탁 기관인 광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3곳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 관계 법규, 애로사항 등 전반 상황을 확인했으며, 보조금 집행 현황, 노무비 전용 계좌 사용 여부 등 예산 부문을 중점 점검했다. 이어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광진구 유일한 공공위탁 사례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시설을 점검했으며, 위탁 사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해 현장을 찾게 됐다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격을 좁히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제도 정비는 끝이 없다며, 광진구 자치법규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발전을 이어가도록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자료]



□ 언론보도 내역



2021. 8. 6. <쿠키뉴스>



2021. 8. 12. <시사매거진>



2021. 9. 9. <이뉴스투데이>



2021. 9. 30. <신아일보>



2021. 10. 12. <쿠키뉴스>



2021. 10. 13. <이뉴스투데이>

... VI |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2021년 활동결과

1. 연구단체명: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2. 구성의원: 김미영(대표의원), 이명옥(간사), 박삼례,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총 6명)
3. 활동기간: 2021. 7. ~ 2021. 12.
4. 연구주제: 제·개정을 요하는 사무의 관련 조례 정비 방안 제시
5. 연구목적: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방안 제시
6. 집행금액: 금17,393,900원(연구활동비 2,999,100원/정책개발비 14,394,800원)
7. 추진실적

구분	간담회 및 세미나	연구용역 보고회	현장방문
건	6	3	5

8. 연구성과

-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2021.12.20.)
-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발의 예정
 - ‘노무비전용계좌’ 사용에 관한 사항 조례 명시
- (연구용역)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대표의원 제안설명문(2021.7.15.)

-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조례 제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조례의 제정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각 지자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위탁’에 대해 돌아보면 행정 효율성 향상, 전문성 제고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관과의 장기 위탁 및 형식적 절차 이행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 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연구회는

-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물론
- 현행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 나아가 위탁 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집중 발굴, 검토하며
- 제·개정을 요하는 사무의 관련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여섯 분의 의원님이 뜻을 모은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가 설립되어,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광진구의회 자치법규회**」 설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발족식 대표의원 개회사(2021.8.5.)

○ 안녕하세요?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이명옥 간사님, 박삼례 의장님과 추윤구·고양석 전 의장님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 의원들을 위해
든든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정팀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내년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라는
거창한 명분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광진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광진구의회도 그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들이 모여 어떠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초석이자 기반이 되는 룰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다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결론이 섰습니다.

○ 사회가 다원화 되고,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회가 최일선에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 흔히 ‘조례’라 불리는 자치법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룰이자, 우리동네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현직 의장님과, 초선과 다선, 청년과 시니어, 여성과 남성 등 전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저희 6명의 의원들이 모여 관록과 경험,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 우리 광진구의 자치법규를 연구해 나가도록 의기투합했습니다.

○ (현수막을 가리키며) 앞쪽 상단의 현수막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단체의 슬로건은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슬로건과 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고심 끝에 이 슬로건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하는 연구가 결코 주민들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을 우리 광진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 발족식을 맞아 의회로 오면서, 여전히 매서운 기세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를 마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스크 속에 숨겨진 표정을 느끼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경제상황에 힘들고,
성장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하지 못해 힘들고,
엄마들은 육아와 자식 뒷바라지에 힘들고,
아빠는 가장의 무게감이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저마다 각자의 힘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이 본인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저희는 절대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광진구민만 바라보고 나가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나아가 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직접 마주하는 위탁의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새롭고 함께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대해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길목에
언제나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가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표의원 인사말(2021.10.7.)

○ 안녕하세요?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두 달간의 연구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인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단체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이명옥 간사님, 박삼례 의장님과
추윤구·고양석 전 의장님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말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방정부, 즉 구청은
직접 공공서비스 생산·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이 확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의 비효율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이라는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속도에 비해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연구단체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실 위탁 사무라는 것이 ‘공공위탁’ 과 ‘민간위탁’ 의 양 날개로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위탁이라는 한 쪽 날개로만 과도하게 비행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지난 두 달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연구단체는 기존의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 이라는 영역까지 많은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위탁이라는 것이 수탁기관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것이기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 지난 시간의 연구결과가 오늘 최종보고회로 나타나는 만큼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위탁사무’ 가 주민들에게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위탁의 양 날개를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최인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김미영 대표의원 5분 자유발언문_제248회 2차 정례회(2021.12.20.)

○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입니다.

○ 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준비 중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공포되어,
중앙에서의 지방자치법 후속작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방의 역할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바,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장 시행에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의회가 선행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법령을 살펴보니,

조례 15건 등 총 28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에 대비해

지난 7월, 전·현직 의장님을 비롯해,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여 조례 연구, 주민 의견 청취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 나아가 타 의회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광진구의회 열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광진구의회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광진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자치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_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
----------	------

발의연월일: 2021. 11. 15.

발 의 자 : 김미영·이명옥·박삼례
추윤구·고양석·장길천
의원(6인)

1. 개정이유

통·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반 조직 구성 변경 (안 제2조)
- 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5조)
- 다. 반상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
- 라.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20. ~ 2021. 11. 24.)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8개반 내지 15개반으로” 를 “8개반부터 12개반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가구 내지 60가구” 를 “30가구부터 70가구”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단 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본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으로, “따른다” 를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를 “운영하며” 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중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 를 “거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행세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 략)</p> <p>② 1통은 <u>8개반 내지 15개반</u>으로 구성한다.</p> <p>③ 반은 <u>20가구 내지 60가구</u>로 구성한다.</p> <p>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u>구청장</u>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본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u>에서</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8개반부터 12개반까지</u>----</p> <p>③ -- <u>30가구부터 70가구</u>-----</p> <p>④ -----</p> <p>-----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p> <p>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p> <p>----- <u>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제4조(통장의 임기) ① -----</p> <p>----- 「<u>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u>」-----</p> <p>----- 따라</p>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삭제

3. 제1호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④ (생략)

<신설>

제8조(반사회) ① 반사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
반사회로 구분 개최한다.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운영하며 -----

----- 사람

3. -----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
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
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
다.

제8조(반사회) ① ----- 거
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
는 사람으로-----.

② 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
반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p>③ (생략)</p> <p>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①·</p> <p>② (생략)</p> <p><신설></p> <p>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내</u>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u>시행세칙</u>) (생략)</p>	<p>있으며, <u>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①·</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u></p> <p>② ----- <u>범위</u>----- -----.</p> <p>제12조(<u>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규칙)개정 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조현호 (02-450-714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8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30가구부터 70가구로 구성한다.

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2. <삭제 2017.11.13.>
3. 제1호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즉시 해촉 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반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7.11.13.>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보안등 및 동관할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통보
4.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
5.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6.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초동 파악 협조
7. 재해(수해 및 제설)시설 확인 협조
8.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업무 협조
10.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예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9호 및 제11조제1항의 복지도우미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복지업무의 민간보조자를 말한다.

제8조(반사회) ① 반사회는 반 내에 거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반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③ 정기반사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 연석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 업무지원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규명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